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93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14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서천호 · 박성훈
윤상현 · 김기현 · 김용태
나경원 · 이진숙 · 김승수
김상훈 · 박형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산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상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‘산촌 관광’ 분야의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·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범위에 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·육성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산촌지역의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5조제1항).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촌진흥특화사업을”을 “산촌진흥특화사업(산촌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·육성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 지역에서 <u>산촌진흥특화사업을</u>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 특화사업계획(이하 “특화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.	제25조(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산촌진흥특화사업(산촌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의 발굴·육성사업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